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의 보훈 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481호, 2023. 5. 23 공포, 2023. 6. 5 시행) 등 7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기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에 국가유공자증 등 기존 보훈 신분증을 삭제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국가보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추진 예정(2024. 10. 22. ~ 11. 30.)

3) 행정규제 :

- 국가보훈대상자 인정 범위 확대 및 유효 신분증명서 명칭을 정비한 개정사항으로 규제심사 비대상으로 통보('24.10.4)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 유족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중기복무제대군인증,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국가보훈등록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제8조의5제1항 관련)

1. 신분증명서

-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 나. 「병역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역증
-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무원 신분증
- 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신분증
- 마. 「사관학교설치법」,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따른 각 사관학교의 사관생도 신분증
- 바. 삭제
- 사.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 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중국 군
대 구성원의 신분증명서

2. 증명서나 서류

-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
-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다. (1)부터 (3)까지의 사람에 대하여 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 이 별표 제1호 및 제2
호 가목·나목에 따른 증명서나 서류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이 법 제7조에 따른 항공보안협회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증명서나 서류
 - (1) 사법경찰관리나 법 집행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호송하는 법 제24조제1항의 호
송대상자
 -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